

##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냈다면?

(국세청, 2007. 6.)

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과다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.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,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않아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. 이런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「경정청구」라고 한다.

예를 들어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.

- ▲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했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
- ▲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▲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

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만 할 수 있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. 단,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.

- ▶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결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
- ▶ 소득,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
- ▶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뤄진 때
- ▶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
- ▶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소된 때
- ▶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
- ▶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때

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돼 있다.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잘못 신고해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.